##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589 발의연월일: 2025. 4. 4.

발 의 자:김준혁·조계원·장종태

서영석 · 김정호 · 권칠승

채현일 · 김원이 · 정춘생

김문수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탄핵소추의결서가 송달되었을 때에는 임명권자가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임명권자가 없는 대통령의 경우 탄핵소추의결서가 송달된 이후 탄핵심판절차 진행 중 대통령이 하야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명확 하지 않아 이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음.

만약 탄핵소추의결서가 송달되어 탄핵심판절차가 개시된 이후 대통령이 하야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이는 현행법에서 탄핵소추의결서가 송달된 이후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취지에 반할뿐 아니라 재판비용과 사회적 비용의 막대한 낭비를초래하게 됨.

이에 탄핵소추된 사람이 대통령인 경우에 대통령은 사임할 수 없도

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

법률 제 호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4조제2항 중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다"를 "정지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소추의결서가 송달되었을 때에는 임명권자는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고, 소추된 사람이 대통령인 경우에 대통령은 사임할 수 없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4조(소추의결서의 송달과 효	제134조(소추의결서의 송달과 효
과) ① (생 략)	과) ① (현행과 같음)
② 소추의결서가 송달되었을	②
때에는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	
사는 <u>정지되며, 임명권자는 소</u>	<u>정지된다</u> .
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	
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다.	
<u> &lt;신 설&gt;</u>	③ 소추의결서가 송달되었을
	때에는 임명권자는 소추된 사
	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
	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고,
	소추된 사람이 대통령인 경우
	에 대통령은 사임할 수 없다.